

대법원 2022. 1. 13 선고 2021다264925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1. 13 선고 2021다26492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23 선고 2020나23348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A

피고,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별

담당변호사 김원중, 한상민, 안시은

판결선고 2022. 1. 13.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23. 선고 2020나23348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살펴본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안철상, 대법관 김재형, 대법관 노정희, 주 심 대법관 이흥구